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 안 번 호

관련 1963

제안일자: 2020. 12. 18 제 안 자: 도시계획관리위원장

1. 수정이유

○ 시장이 사회주택 공급사업을 공동으로 지원하는 경우 중 「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는 제외 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○ 안 제10조제2항 중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집합투자기구'는 제외하도록 수정함.

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 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0조제2항 본문 중 '또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공동으로'을 '와 공동으로'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9조(도시개발 등을 통한	제9조(도시개발 등을 통한	제9조(도시개발 등을 통한
사회주택 택지 마련)	사회주택 택지 마련)	사회주택 택지 마련)
① ~ ③(생략)	① ~ ③(현행과 같음)	① ~ ③ (개정안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④ 시장은 주거관련 사	<u>④ (개정안과 같음)</u>
	회적 경제 주체에게 공	
	급할 토지의 확보를 위	
	해 서울주택도시공사(이	
	하 "공사"라 한다)에 출	
	자할 수 있다. 이 경우	
	공사는 주거관련 사회적	
	경제 주체에게 토지를	
	임대하며 대부료는 제3	
	<u>항을 준용한다.</u>	
- 1 10 - 7 - 1 기 - 1 - 1 - 1 - 1 - 1 - 1 - 1 - 1 -	-1]10-7/기기	
		제10조(시장 등의 공동사
	업 추진) <u>(1)</u>	업 추진) ① (개정안과
택임대 및 주택관리 사		같음)
업 등 주택사업에 대하		
여 자본금 및 현물의 출		
자, 인력 등의 지원을 통		
해 주거관련 사회적 경		
제 주체와 공동으로 사		
업을 추진할 수 있다.		

현	행	개 정 안	수 정 안
<u><신 설></u>		② 시장 등은 「부동산	② 시장 등은 「부동산
		투자회사법」에 따른 부	투자회사법」에 따른 부
		동산투자회사 또는 「자	동산투자회사 와 공동으
		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	로 사회주택 공급사업을
		관한 법률」에 따른 집	지원할 수 있다.
		합투자기구와 공동으로	
		사회주택 공급사업을 지	
		원할 수 있다.	

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시장은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공급할 토지의 확보를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에 출자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사는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토지를 임대하며 대부료는 제3항을 준용한다.
-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② 시장 등은 「부동산투자회사법」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와 공동으로 사회주택 공급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도시개발 등을 통한 사회주택	제9조(도시개발 등을 통한 사회주택
택지 마련)	택지 마련)
① ~ ③(생략)	① ~ ③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④ 시장은 주거관런 사회적 경제 주체
	에게 공급할 토지의 확보를 위해 서울
	주택도시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에
	출자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사는 주거
	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토지를 임
	대하며 대부료는 제3항을 준용한다.
제10조(시장 등의 공동사업 추진) 시장 등은 주택임대 및 주택관리 사업 등 주택사업에 대하여 자본금 및 현물의 출자, 인력 등의 지원을 통해 주거관 련 사회적 경제 주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	제10조(시장 등의 공동사업 추진) ①